

Q1.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 에서만 가능한가요?

- A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적용을 받는 확정기여형(DC)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DB)은 확정기여형(DC) 또는 혼합형으로 전환 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DC전환은 정기 DC전환 연 2회(6월, 12월), 중도인출사유자에 한 해 추가 연 2회(3월, 9월) 가능합니다.

Q2. 현재 확정기여형(DC) 이면 중도인출 신청을 어디로 하나요?

- A2.
- 현재 확정기여형(DC)인 경우는 법정요건을 충족시 언제든지 해당 DC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로 별도 신청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인감 날인 등 절차상 필요한 업무는 DC 금융기관과 보수팀이 처리합니다.

Q3. 현재 확정기여형(DC) 이면 중도인출 신청을 어디로 하나요?

- A3.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다음 6가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임차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 ③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이며, 전년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의료비의 경우
 - ④ 가입자가 희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 ⑤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⑥ 그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Q4.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 서류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4.
- 중도인출사유 발생시 DC금융기관 직접 내방하시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KT 시스템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퇴직연금 금융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는 “중도인출 안내문” 참조)

- 금융기관에 중도인출을 신청할 때는 준비서류를 문의하시고 증빙서류 일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인출 사유별로 다르며, 필수로 제출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사유	증빙 서류	발급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민원24)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 ▪ 매입 주택의 등기부등본	주민센터, 구청, 온라인(민원24)
	▪ 무주택서약서	가입 금융기관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무주택자의 전세,임차보증금 부담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민원24)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센터, 구청, 온라인(민원24)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의료비영수증	병원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ERP
	▪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구청, 온라인(민원24)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 법원결정문 또는 확정증명원 (최근5년 이내)	법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파산선고문(최근5년 이내)	법원

※ 주택매매계약서와 분양계약서는 사본 제출, 기타서류는 원본 제출

- 증빙서류는 중도인출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발급 또는 작성분만 인정이 됩니다.
- 주택구입의 경우는 중도인출 신청 접수시점에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을 위한 증빙은 금융사마다 상이하며, 각 금융사로 문의 바랍니다.
- 장기 요양의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반드시 '향후 6개월 이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Q5. 중도 인출시 직원이 직접 인감 날인을 본사에서 받아서 제출 해야 하나요?

A5. • 아닙니다. 타사의 경우, 해당 직원이 직접 회사의 날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있으나 kt의 경우에는 직원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금융기관에서 접수하여 kt본사로 날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중도인출 관련 날인을 본사로 요청하실 필요는 없으며 금융기관으로 신청서 및 증빙

서류만 제출하시면 모든 신청이 마무리되며, 중도인출 적격/부적격 여부는 금융기관에서 서류 확인 후 알려 드립니다.

Q6. 주택구입이나 분양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주택을 신축해도 자격이 되나요?

- A6.
- 네, 주택 신축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서류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① 무주택서약서
 - ②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③ 주민등록등본
 - ④ 세목별 과세증명서
 - ⑤ 신축 주택 설계서
 - ⑥ 공사계약서 (단, 신축 건물의 용도가 “거주용 주택”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Q7.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부분만 인출도 가능하나요?

- 상반기에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자와 중도인출 신청자는 전년도말까지 적립된 퇴직금 총액이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 되며, 하반기에 DC형 전환 또는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는 당해년도 6월말 기준의 퇴직금 총액이 DC형으로 전환됩니다.

매월 적립되는 퇴직금은 추정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전산 (ERP>HR>개인업무>급여>급여>퇴직금>예상액 조회)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다만, 시스템에서 일괄 추정한 금액이므로 DC전환된 총액과는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7.

<보수규정 제33조(평균임금)> 1+2
 1. 전환기준일 전 3개월 기준연봉월정액, 초과근무수당, 가산금, 휴일근무수당 3등분액
 2. 전환기준일 전 1년 성과급, 연차수당의

<기준연월> 퇴직금 추정의 기준이 되는 월

<퇴직총당금> 기준연월까지의 추정 퇴직금

법정계산일	계산년월	중도인출일	산정기간	평균임금	자금률	퇴직총당금
1995-08-08	2020/02	1999-06-30	20년 244 일	5,436,379	20.67	112,361,740

퇴직금(2020.02월말 기준)

법정퇴직저축분	법정퇴직연금대역	퇴직금총액(IRP 예견금액)
21,971,392	90,390,348	112,361,740

※ 만 55세 이상은 퇴직IRP 또는 급여/별도 계좌 중 선택 가능하며 회사대부금은 별도로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퇴직금에서 상계불가)
 (만 55세 미만은 반드시 퇴직 IRP 제출)

퇴직세액 환상 내역	
퇴직소득세	3,253,000
퇴직수당세	325,300

- 부분인출도 가능하며, 중도인출 최종수령액은 DC 전환된 금액(퇴직총당금)에서 퇴직소득세/주민세를 원천 징수한 금액으로 ERP시스템의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Q8. 주택구입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할 때, 무주택 기간이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A8. •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가능하며, 무주택 기간은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9.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A9. • 네, 가능합니다. 부부 사원의 경우도 각각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Q10.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인출이 불가능가요?

A10. •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 등기가 완료되어 있으면 유주택자의 지위에 해당하므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Q11. 장기요양 사유로 인출신청을 할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에 정하고 있는 범위를 같이 적용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생계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동거여부 불문	-
A11. 기타 부양 가족	직계비속·입양자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단, 학업·요양 등의 일시퇴거 또는 직계존속의 주거형편상 별거도 동거가족으로 봄)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기초수급자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 부양가족에 장인, 장모 모두 포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증빙 필수)

Q12. 장기요양의 경우,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에 꼭 “향후 6개월 이상”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야 하나요? 내용에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12.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신청 시점 한 달 이내의 작성분 이어야 하며, “향후 6개월 이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금융기관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중도인출을 할 경우는 금융감독원의 감사 지적 대상이 되어 금융기관에서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근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6개월 이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실질적인 요양이나 치료가 아닌 “추적 관찰” 등으로 표현되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13. 장기요양의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요건을 강화한 이유가 뭔가요?

- A13. • 퇴직급여제도의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요양비용을 부담할 경우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왔는데, 이의 남용으로 노후 소득재원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사유를 일부 제한한 것입니다.

Q14. 중도인출 신청자의 연간 임금총액 산출기준과 증빙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 A14. • 중도인출을 신청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임금수준은 가입자의 원징수영수증, 산재보험·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으로 확인.
-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직전년도 1년의 기간 중 휴직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과 휴직기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합산하여 연간 임금총액 산정됩니다.
- 다만,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직전1년간의 임금총액 수준이 직전년도 임금수준 보다 낮음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액을 연간 임금총액으로 산정됩니다.

Q15. 중도인출 신청 시점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만 합산하는지요?

- A15. • 의료비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중도인출 신청 당시 직전 1년 동안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요양이 진행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진단서 등으로 증빙)
- 이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도인출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에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를 말하며 증빙자료는 중도인출 시점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만 인정됩니다.

Q16. 중도인출 신청시 고려되는 의료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 A16. • 병·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원·산후조리원 등에 진찰·치료, 요양 등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의 구입·임차비, 노인장기요양급여, 산후조리비,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및 보청기 구입비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 단, 미용·성형수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미포함이며 실손의료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Q17.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는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개인신용회복 절차 진행중인 경우는 중도인출이 불가능가요?

A17. • 불가능합니다.

Q18. 중도인출 이후에 사유가 된다면 다시 인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A18. • 인출 이후에 다시 인출 신청하는 시점에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지위가 유지된다면 중복해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분양 받아 계약금을 납부할 때 중도인출을 하고, 잔금 납부시까지 다시 적립된 퇴직금을 인출을 신청할 경우 무주택자 지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의 경우도 요양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어 다시 인출을 해야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중도 인출시와 동일하게 공통서류와 해당 증빙서류 일체는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인출 사유 중 전세 및 임차보증금은 재직 중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Q19. 이번 중도인출 이후에 향후에도 신청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A19. • 매년 3월, 9월에 법정 중도인출 사유자에 한해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DC형 또는 혼합형으로 전환(6, 12월 시행)한 분들은 법정 중도인출 사유가 되면 회사 시행과 무관하게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체적인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 시점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Q20. 주택구입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할 때, 무주택 기간이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A20. • 중도인출 신청 접수부터 인출 가능일까지는 약 1개월 소요되는데, 프로세스별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다음과 같습니다.(영업일 기준)
① 금융기관에서 접수 기간 : 10일
② 금융기관별 최종 접수 명단 확정 후 KT 통보 및 대상 제외자 확인 : 3일
③ 개인별 퇴직급여 산정 및 금융기관별 DC전환 금액 확정 : 10일
④ 자금운용팀 금융기관별 DC 전환 금액 준비 : 5일
⑤ DC전환일 이후 중도인출 신청시 상품 해지 및 계좌이체 : 3~5일
(금융기관별로 상이함)

Q21. 중도인출 이후 금융기관 변경이 가능한가요?

- A21. • 중도인출 또는 DC형, 혼합형 전환 후에 금융기관 변경을 원할 경우는 DC 전환 시행시 (매년 6, 12월)에 금융기관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변경 전 가입한 상품의 해지에 따른 불이익(약정이자율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22.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이 뭔가요?

- A22. • 퇴직연금제도는 근무기간 중 일정금액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는 금융기관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산정된 금액의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우리회사는 2011년 4월까지 퇴직금제도로 운용한 후에 2011.4.29일부터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을 먼저 도입하였으며, 2012.12월에 확정기여형(DC)을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 DB(Defined Benefit), DC(Defined Contribution)

Q23.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형)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A23. •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급여의 산정방식입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금 제도와 같은 산정방식을 적용하며 퇴직금수령액은 평균임금과 근속년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당해년도 임금총액)/12로 매년 계산된 퇴직금을 금융기관으로 납입하고, 근로자 본인의 운용에 따른 운용수익(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금수령액이 결정됩니다.
• 확정급여형(DB)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확정기여형(DC)과 혼합형 가입자만 DC 이전 금액에 한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Q24. DC형 또는 혼합형으로 전환 후에 확정급여형(DB)으로 다시 변경할 수 없나요?

- A24. • DC형또는 혼합형으로 전환 후 확정급여형(DB)으로 환원 할 수 없습니다.